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 가맹사업·대규모유통업·대리점사업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정책관등 및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3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4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가맹사업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6명, 6급 3명, 7급 1명) 중 11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6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1명(4급 1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신산업 분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4급 1명, 5급 5명, 6급 2명, 7급 1명) 중 8명(5급 5명, 6급 2명, 7급 1명)은 증원하며, 1명(4급 1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제조·건설 분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3명),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기능을 강화하

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명) 및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7명, 6급 5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에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중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은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신속한 약관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에 서비스업 분야 부당한 공동행위의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증원하며, 1명(4급 1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국제카르텔 사건의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제조업 분야 부당한 공동행위의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 밑에 전자적 증거의 체계적인 수집·분석을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4급 1명, 5급 1명, 6급 3명, 7급 5명)을 증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건 관련 경제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분장하던 경제분석 업무를 조사관리관으로 이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1명, 6급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밑에 부당한 공동행위 안전의 신속한 심리·의결을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4급 1명, 5급 5명,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하도급·가맹 등 관련 안전에 대한 심리·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및 소송 수행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6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예산처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3. 4. ~ 3.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건 관련 산업 및 제도 등에 대한 경제분석
제15조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둔다”를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장”을 “국장 및 정책관등”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중 “43명”을 “50명”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484”를 “599”로 하고, 일반직 계 “481”을 “596”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2”를 “13”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461”을 “575”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25조제1항 관련)

1.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조사관리관	1명
심판관리관 1개 담당관	10명
조사관리관 1개 담당관	10명
시장감시국 1개 과	4명
기업거래결합심사국 1개 정책관등	1명
기업거래결합심사국 1개 과	12명
기업거래결합심사국 1개 과	8명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건 관련 경제분석	13명

2.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불공정행위 사건조사 및 민원 처리 업무수행	45명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조사관리관) ① (생략)	제9조(조사관리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조사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②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u>7.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건 관련 산업 및 제도 등에 대한 경제분석</u>
<u>7. · 8.</u> (생략)	<u>8. · 9.</u>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제15조(카르텔조사국) ① · ② (생략)	제15조(카르텔조사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6.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건 관련 산업 및 제도 등에 대한 경제분석</u>	<u><삭 제></u>
제16조(기업거래결합심사국) ①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 국장 1 명을 둔다.	제16조(기업거래결합심사국) ① - ----- --- <u>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u>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u>국장 및 정책관등</u> ----- -----.

③ (생 략) 제2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u>43명</u>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50명</u> ----- ----- ----- ----- ----- ----- ----- -----.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84</u>	<u>599</u>	+115
•	•	•	
•	•	•	
일반직 계	<u>481</u>	<u>596</u>	+115
고위공무원단	<u>12</u>	<u>13</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461</u>	<u>575</u>	+114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57